

제6장 도안 사용 승인 절차

6.1 일반사항

검증의견서 및 검증을 받은 제품 등에 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고, 도안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표시 방법에 따라 도안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KS I ISO 14025의 요건을 준수한다.

6.2 도안의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

- (1) 검증을 받은 자가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의 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5-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외 상호인정 협정된 기관의 도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의 도안 사용 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5-1호 서식 및 5-1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운영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만약, 제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운영기관은 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부보고를 통하여 최종 도안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 운영기관은 도안 사용 승인이 결정되면,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5-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3 탄소 발자국 도안 표시방법

6.3.1 탄소 발자국을 나타내기 위한 도안의 명칭은 ‘카본 별류 도안(탄소발자국 도안의 명칭이며,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포집한 가상의 풍선을 말한다.)’이라 하며, 도안 모형은 제품 또는 포장재 및 용기에 제1형으로 표시하고, 불가할 경우 제품 설명서 및 인터넷 등에 제2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6.3.2 도안 표시 유형

- (1) 제1형(제품 또는 포장재 및 용기에 표시)

- ① 도안모형



② 도안요령



a: 기관별 로고 최소규정(mm)

③ 도안 설명

- 카본 별룬 도안 도안의 별색컬러는 'CO2'는 KITECH Blue로 하고, '바탕'은 KITECH Green, '탄소발자국'은 풍선 안에 음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KITECH Blue, KITECH Green, 그리고 흑백음영이다.
-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의 경우에 'CO2'는 C95+M73으로 하고, '바탕'은 C55+Y100로 하며, '탄소발자국'은 안에 음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95+M73, C55+Y100, 그리고 흑백음영이다.
-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100% 1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한다.
- 탄소배출량 산정에 사용한 검증기준(ISO 14067, PAS 2050 등)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약자(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및 검증기관의 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형(제품 설명서 및 인터넷 등에 영문으로 게재)

1. General Information	
2. Product Description	
3. The Amount of CO2-equivalent	
4. Certification information	
Operation	KITECH
Certificate Authority[Standard]	
Certificate No.	
Valid Until	
Label	

[별지 제5-2호 서식]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도안 사용 협약서

도안 사용 신청자(조직)명 :

본인(기관)은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도안 사용을 위해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기관)은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생기원에서 승인 및 공시된 검증기관으로부터 제품 발자국에 대해 검증 받은 자이다.
- 생기원은 등록상표인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도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가진다.
- 도안 사용 신청자인 본인(기관)은 생기원으로부터 등록번호와 함께 도안 표시방법에 따라 도안을 사용할 것이다.

제1조(정의)

1. 도안 표시방법

- 이는 협약 문서의 일부분이며,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운영요령과 세부운영지침에 규정된 도안 표시방법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도안 저작권)

1. 도안은 생기원 소유로 등록된 상표이다.

- 2. 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권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조치가 따를 것이다. 도안 사용은 생기원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된다.

제3조(도안 사용자의 책임)

- 1. 도안 사용자는 생기원이 발행한 등록번호와 도안 표시방법에 따라 도안을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기초로 도안 사용자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 2. 도안 사용자의 정보와 발자국 정보 등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도안 사용자는 생기원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생기원의 책임)

- 1. 생기원은 도안 사용 협약이 체결된 후 2주 이내에 도안 사용자에게 도안 사용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 생기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도안 사용과 관련하여 생기원의 규정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도안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벌금)

- 생기원은 도안 사용자가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도안을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계약 불이행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 생기원은 도안 사용자가 계약을 위배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알린 후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계약 종료)

- 협약 당사자가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 생기원은 도안 사용자가 계약 위반의 혐의가 있거나 도안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 할 수 있다. 혐의가 의심스러운 경우, 생기원은 도안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계약중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생기원은 일시적인 중지 기간을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로 한다. 생기원은 도안 사용자가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생기원에 통보한 경우 일시적인 계약 중지를 종료할 수 있다.
- 생기원은 만약 도안 사용자가 협약서상의 내용과 도안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계약의 효과를 즉각 종료할 수 있다.
- 생기원은 도안 사용자에 의해 야기되는 일시적인 중지 또는 계약종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

제7조(보고 및 제출)

- 생기원은 도안 사용자에 의해 제공받는 검증상태와 관련한 도안 사용자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유효성)

- 계약은 당사자의 서명과 함께 체결된다.

제9조(계약의 기타 용어)

- 생기원은 만약, 도안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약 제3자로부터 불만을 제기 받은 경우, 도안 사용자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도안 사용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0조(중재)

- 이 계약은 국내의 법에 적용된다.

20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운영기관) 주소 :

대표 : (서명 또는 인)

도안 사용 신청자(기관) 주소 :

대표 : (서명 또는 인)